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8.23. (금) 조간	배포	2024.8.22. 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팀 장	박재영	(02-3145-759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오수경	(02-3145-7609)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부 장	임병태	(02-2003-9110)
	증권2부	담당자	팀 장	정환철	(02-2003-9111)

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.

- 「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」 개정 -

〈주 요 내 용〉

1.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기준 마련

- □ (현행) 증권사가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관련 구체적 기준 부재로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
- □ (개선)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

2. 수수료 지급기준의 충실한 안내

- □ (**현행**) 증권사가 투자자와 리테일풀 약정 체결시 **구체적**인 **수수료** 지급기준 설명 미흡
- □ (개선) 증권사 지급 수수료율(수취 수수료율의 00% 지급)을 구체적으로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

3. 중권사별 수수료율 비교공시

- □ (현행) 투자자는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 수수료 확인 곤란
- □ (개선) 각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 도입

Ⅰ. 모범규준 개정 배경

- □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,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
 - 금감원은 '23.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「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T/F」를 구성·운영하여
 - 증권사의 **리테일풀 수수료 현황**을 **분석**하고 **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** 등을 위한 **다양한 방안**을 검토하였습니다.

<참 고> 리테일풀 개념 및 거래구조

- (개념)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(Pool)
- (구조)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하여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



Ⅱ. 모범규준 개정 주요내용

1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(현황)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-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*만 정하고,
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지급 하는 등
 *[대여종목 전일 종가×실제 대여수량×수수료율]을 대여기간으로 일할계산
- 중권사가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□ (개선)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*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
 - * (예)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율의 00% 이상을 리테일풀에 대여수수료로 지급
 -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
2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실히 사전 안내하겠습니다.

- □ (현황)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하여야 하나
 - 설명서상 대여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모범규준의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*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
 - * (예) 리테일풀 주식이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, 증권사는 수취한 대여수수료율의 00% 이상을 리테일풀에 수수료로 지급
 - 동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.

3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.

- □ (현황) 투자자가 증권사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정보 탐색 및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하여
 -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비교공시 도입(안)						
구 분	신규 체결	최저 보장 수수료				
A증권사	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의 <u>50%</u>	연 <u>0.01%</u>				
B증권사	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의 <u>40%</u>	연 <u>0.03%</u>				
:						

Ⅲ. 기대 효과

- □ 중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여동하여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,
 -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하여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,
 - **증권사별**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·공시함에 따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Ⅳ. 향후 계획

금융투자협회는 '24.9월중	모범규준(안)을	사전예고하고	10월중
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,			

-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'24.11월중 시행될 계획입니다.
- □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여부,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